

2026년도 제1회 이천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1회 이천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속기 전문 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각종 회의 속기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회의 음성 녹음파일 관리 ■ 의사 진행 지원 ■ 회의장 관리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관련 업무

※ 근무실적 및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55조, 제62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요건 및 자격

-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까지 출생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결격사유 등 판단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9조 및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
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
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 자격 기준
속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 **(주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용분야	임용직급	근무시간	연봉액
속기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8,759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등 별도 지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구분	일자	비고
서류접수	2026. 9. 7.(월) ~ 9. 15.(화)	
서류전형	2026. 9. 17.(목) ~ 9. 18.(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6. 9. 22.(화)	
면접시험	2026. 10. 1.(목) 14:00 (예정)	장소: 이천시의회 2층 브리핑룸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2026. 10. 6.(화)	

※ 공고 및 발표는 이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i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시

○ 접수처 : 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의회 1층 의회사무과 의정팀(031-644-252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및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이천시청 민원여권과(시청1층)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

-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 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1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
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이천시 수입증지 첨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

■ 응시수수료 반환

-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금액
 -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위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 응시수수료 반환을 원하는 경우 접수처에 응시의사 철회 및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함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 7호 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각 응시분야별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⑩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⑫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부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미해당자는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에 재응시 불필요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자격·경력·학위 검증 등을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또는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구제조치를 실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의회 의정팀 인사담당자 ☎031-644-2527

붙임2 제출서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 후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 | |
|----------------------------|--|
| 1. 응시원서 | ☐ 제출 ☐ 미제출 |
| 2. 이력서 | ☐ 제출 ☐ 미제출 |
| 3.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
|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 제출 ☐ 미제출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 8.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미제출 |
| 9.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 ☐ 제출 ☐ 미제출 |
| 10.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 제출 ☐ 미제출 |
| 11.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 12.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

2026년 월 일

성명

(인/서명)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1회 이천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이천시 수입증지 첨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제1회 이천시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이천시 수입증지 : 이천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첨부
 - 5급·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	----------	----------	--	-----	--

나. 응시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응 모 예 정 관 련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책(직위)	담당업무	비고 (전일, 시간제)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 임용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동기
- 성장과정
- 경력 및 직무기술
- 기타사항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직무 관련 경력 및 경험, 업무 수행능력 및 성과, 직무에 대한 이해와 향후 포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 임용예정분야 : ()분야 ()급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보고서 각 쪽에 쪽 번호를 부여함(편철하지 말 것).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작성요령】

※ 해당하는란에 “○”표기

※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표기 가능

성명 : (서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속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개 인 정 보 제 공·이 용 동 의 안 내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4대 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에만 보유·이용·보관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열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생년월일 :

성명 :

(서명)